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3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  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조정실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조정실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국 신설 및 조직개편을 통해 달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화·세분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.

## 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### ○ “국” 단위 개정사항으로(안 제3조)

- 기획·홍보·스마트 분야와 일자리·경제 분야를 통합한 “기획경제국” 신설을 통해 미래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
- 자치행정국을 “행정교육국”으로, 복지문화국을 “복지증진국”으로, 경제환경국을 “문화환경국”으로 개편하여 국별 전문성 및 통합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.

### ○ “과” 단위 개정사항으로(안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7조의3)

- 스마트도시과와 회계과를 신설하고 각각 기획경제국과 행정교육국에 배치하여, 스마트도시 사업 및 회계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, 기획조정실을 “기획전략과”로, 홍보전산과를 “홍보미디어과”로, 여성가족과를 “아동가족과”로 명칭변경하여 개편이후 부서별 주요업무와 부서명칭 간 직관성을 높였습니다.
  - 그리고 국 신설 및 개편에 따라 소속 국별 부서간 통합 시너지를 고려하여 “기획전략과를 기획경제국”으로, “홍보미디어과를 舊자치행정국에서 기획경제국”으로, “일자리지원과 및 경제지원과를 舊경제환경국에서 기획경제국”으로, “평생교육과를 舊복지문화국에서 행정교육국”으로, “위생과를 舊경제환경국에서 복지증진국”으로, “문화관광과 및 체육청소년과를 舊복지문화국에서 문화환경국”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.
- “과”별 분장 사무 개정사항으로(안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7조의3 제8조)
- 기획전략과 내 “지속가능발전팀”을 신설하고, “기후변화대응·탄소중립” 업무중 일부를 기후환경과에서 이관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.
  -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분장 사항으로 “스마트도시 조성”을 명시화하고 舊홍보전산과에서 “정보빅데이터·통계·전산운영·통신” 업무를, 안전도시과에서 “통합관제”를 이관하여 통합시너지 효과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.
  - 그 외 홍보미디어과 분장 사항 중 “언론지원”을 명시화하고 총무과에 “국제교류·외국인주민 지원”을 이관, 징수과에 “자동차세” 업무를 이관, 회계과에 “회계·복식부기”를 이관하고 “청사관리” 업무를 명시화하였으며, 행복나눔과에 “주거복지”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.

##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년 8월 28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##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,
-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증원 등 직접적인 비용추계는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작성하였습니다.

##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변화에 맞춘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개정사항이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##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0092310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9. 1.  
제 출 자: 달서구청장  
(기획조정실장)

## 1. 개정이유

- 국 신설 및 조직개편을 통해 달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화·세분화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“실·국”의 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 - 신 설: 기획경제국
  - 명칭변경
    - 자치행정국 → 행정교육국
    - 복지문화국 → 복지증진국
    - 경제환경국 → 문화환경국
- “과”의 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7조의3)
  - 신 설: 스마트도시과(기획경제국), 회계과(행정교육국)
  - 명칭변경
    - 기획조정실 → 기획전략과
    - 홍보전산과 → 홍보미디어과
    - 여성가족과 → 아동가족과
  - 이 관
    - 기획전략과(舊기획조정실 → 기획경제국)
    - 홍보미디어과(舊자치행정국 → 기획경제국)
    - 일자리지원과·경제지원과(舊경제환경국 → 기획경제국)
    - 평생교육과(舊복지문화국 → 행정교육국)

- 위생과(舊경제환경국 → 복지증진국)
- 문화관광과, 체육청소년과(舊복지문화국 → 문화환경국)

○ 분장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7조의3 제8조)

- 신 규

- 기획전략과: 지속가능발전
- 이 관(명시화)
  - 기획전략과: 기후변화대응 · 탄소중립 업무중 일부(←기후환경과)
    - ※ 상세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항에서 정함
  - 스마트도시과: 스마트도시 조성(←舊기획조정실, 명시화)
    - 정보빅데이터 · 통계 · 전산운영 · 통신(←舊홍보전산과)
    - 통합관제(←안전도시과)
  - 홍보미디어과: 언론지원(←舊홍보전산과, 명시화)
  - 총무과: 국제교류 · 외국인주민 지원(←기획전략과)
  - 징수과: 자동차세(←세무과)
  - 회계과: 회계 · 복식부기 · 청사관리(←총무과, 명시화)
  - 행복나눔과: 주거복지(←복지정책과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3. 8. 3. ~ 8. 23.)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: 원안 동의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기획조정실 · 청렴감사실 · 경제환경국 · 자치행정국 · 복지문화국” 을  
“청렴감사실 · 기획경제국 · 행정교육국 · 복지증진국 · 문화환경국” 으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제7조의3으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기획경제국)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전략과 · 스마트도시과 · 홍보미디어과 · 일자리지원과 및 경제지원과를 둔다.

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획 · 인구 및 혁신 · 예산 · 공모 ·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 · 지속 가능발전 · 기후변화대응 · 규제개혁법무 등에 관한 사항

2. 스마트도시 조성 · 정보빅데이터 · 통계 · 전산운영 · 통신 · 통합관제 등  
에 관한 사항

3. 홍보기획 · 언론지원 · 미디어소통 등에 관한 사항

4. 일자리창출 · 취업지원 · 사회적경제 ·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

5. 경제정책 · 기업지원 · 창의발명 · 유통지원 · 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행정교육국) ① 행정교육국에 총무과 · 평생교육과 · 종합민원과 · 세무과 · 징수과 및 회계과를 둔다.

② 행정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총무 · 자치행정 · 의회협력 · 국제교류 · 외국인주민 지원 · 인사교육 ·  
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

2. 평생교육 · 교육지원 · 독서진흥 ·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3. 민원행정 · 민원처리 · 여권 · 가족관계등록 · 민원분실 등에 관한 사항

4. 세무관리 · 시세 · 구세 · 주민세 · 지방소득세 · 세무조사 · 과표 등에 관한 사항

5. 세입총괄 · 체납정리 · 체납처분 · 세외수입 ·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

6. 회계 · 복식부기 ·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의2(복지증진국) ①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 · 어르신장애인과 · 아동가족과 · 행복나눔과 및 위생과를 둔다.

② 복지증진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복지정책 · 기초생활보장 ·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
2. 노인정책 · 노인시설 · 장애인복지 ·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

3. 여성친화 · 가족아동 · 결혼장려 · 보육 · 드림스타트 ·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 조사 등에 관한 사항

4. 나눔협력 · 자원봉사 · 희망이음 · 현장복지서비스 ·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

5. 공중위생 · 식품안전 · 음식문화개선 · 위생지도 · 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의3(종전의 제6조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의3(문화환경국)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· 체육청소년과 · 교통행정과 · 주차관리과 · 청소과 및 기후환경과를 둔다.

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 관리 · 관광진흥 · 선사문화 · 별빛캠프 등에 관한 사항

2. 체육진흥 · 체육시설 ·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

3. 교통행정 · 교통시설 · 운수행정 · 교통사범관리 등에 관한 사항

4. 주차기획 · 교통지도 · 차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

5. 청소행정 · 재활용 ·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

6. 환경보호 · 대기보전 · 에너지관리 · 수질보전 · 환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민방위 · 통합관제” 를 “민방위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 후단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·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, 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고, 기획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복지문화국장, 경제환경국장, 도시창조국장, 기획조정실장”을 “행정교육국장, 복지증진국장, 문화환경국장, 도시창조국장, 기획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기획조정실을”을 “기획전략과를”로 한다.

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경제환경국장, 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도시창조국장, 보건소장, 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, 행정교육국장, 복지증진국장, 문화환경국장, 도시창조국장, 보건소장, 기획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문화국장, 경제환경국장”을 “복

지증진국장, 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⑦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환경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⑧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각각 “행정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경제환경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, 행정교육국장, 복지증진국장, 문화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⑩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획조정실을”을 “기획전략과를”로 한다.

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행정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⑫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홍보전산과장”을 각각 “스마트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
⑬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복지증진국장”으로 한다.

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문화국장, 자치행정국장” 을 “복지증진국장, 행정교육국장” 으로 한다.

⑮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복지문화국장” 을 “복지증진국장” 으로 한다.

⑯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중 “여성가족과장” 을 각각 “아동가족과장” 으로 한다.

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여성가족과장” 을 “아동가족과장” 으로 한다.

⑱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경제환경국장, 도시창조국장, 보건소장, 기획조정실장” 을 “기획경제국장, 행정교육국장, 복지증진국장, 문화환경국장, 도시창조국장, 보건소장” 으로 한다.

⑲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문화국장” 을 각각 “문화환경국장” 으로 한다.

⑳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문화국장” 을 각각 “문화환경국장” 으로 한다.

㉑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제환경국장” 을 “문화환경국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1. 기획전략과장

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경제환경국장, 기획조정실장” 을 “문화환경국장, 기획 전략과장” 으로 한다.

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 을 “기획전략과장” 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 · 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조정실</u> · 청렴감사실 · 경제환경국 · 자치행정국 · 복지문화국 및 도시창조국을 둔다.</p> <p><u>제4조(기획조정실)</u> 기획조정실장은 기획 · 국제교류 · 인구 및 혁신 · 예산 · 공모 ·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 · 규제개혁법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실 · 국의 설치) ----- ----- 청렴감사실 · 기획경제국 · 행정교육국 · 복지증진국 · 문화환경국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	<p><u>제6조(기획경제국)</u>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전략과 · 스마트도시과 · 홍보미디어과 · 일자리지원과 및 경제지원과를 둔다.</p> <p>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획 · 예산 · 인구 및 혁신 · 예산 · 공모 ·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 · 지속가능발전 · 기후변화대응 · 규제개혁법무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스마트도시 조성 · 정보빅데이터 · 통계 · 전산운영 · 통신 · 통합관제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홍보기획 · 언론지원 · 미디어소통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일자리창출 · 취업지원 · 사회적</li> </ol>

		경제 ·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
	5. 경제정책 · 기업지원 · 창의발명	
		· 유통지원 · 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
제7조(자치행정국)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· 홍보전산과 · 세무과 · 징수과 · 종합민원과를 둔다.		제7조(행정교육국) ① 행정교육국에 총무과 · 평생교육과 · 종합민원과 · 세무과 · 징수과 및 회계과를 둔다.
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	② 행정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총무 · 자치행정 · 의회협력 · 인사교육 · 후생복지 · 회계 · 복식부기 등에 관한 사항		1. 총무 · 자치행정 · 의회협력 · 국제교류 · 외국인주민 지원 · 인사교육 ·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
2. 홍보기획 · 미디어소통 · 정보빅데이터 · 통계 · 전산운영 · 통신 등에 관한 사항		2. 평생교육 · 교육지원 · 독서진흥 ·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세무관리 · 시세 · 구세 · 자동차 · 주민세 · 지방소득세 · 세무조사 · 과표 등에 관한 사항		3. 민원행정 · 민원처리 · 여권 · 가족관계등록 · 민원분실 등에 관한 사항
4. 세입총괄 · 체납정리 · 체납처분 ·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		4. 세무관리 · 시세 · 구세 · 주민세 · 지방소득세 · 세무조사 · 과표 등에 관한 사항
5. 민원행정 · 민원처리 · 여권 · 가족관계등록 · 민원분실 등에 관한 사항		5. 세입총괄 · 체납정리 · 체납처분 · 세외수입 ·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
제7조의2(복지문화국)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· 어르신장애인		6. 회계 · 복식부기 ·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		제7조의2(복지증진국) ①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 · 어르신장애인

과 · 행복나눔과 · 여성가족과 · 문  
화관광과 · 체육청소년과 · 평생교  
육과를 둔다.

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 
분장한다.

1. 복지정책 · 기초생활보장 · 주거  
복지 ·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 
사항
2. 노인정책 · 노인시설 · 장애인복  
지 ·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
3. 나눔협력 · 자원봉사 · 희망이음  
· 현장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  
항
4. 여성친화 · 가족아동 · 결혼장려  
· 보육 · 드림스타트 · 아동보호  
및 아동학대사건 조사 등에 관  
한 사항
5.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 관리 ·  
관광진흥 · 선사문화 · 별빛캠프  
등에 관한 사항
6. 체육진흥 · 체육시설 · 청소년  
등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· 교육지원 · 독서진흥  
·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  
한 사항

제6조(경제환경국) ① 경제환경국에  
일자리지원과 · 경제지원과 · 교통  
행정과 · 주차관리과 · 청소과 · 위

과 · 아동가족과 · 행복나눔과 및  
위생과를 둔다.

② 복지증진국장은 다음 사항을  
분장한다.

1. 복지정책 · 기초생활보장 · 통합  
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2. 노인정책 · 노인시설 · 장애인복  
지 ·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
3. 여성친화 · 가족아동 · 결혼장려  
· 보육 · 드림스타트 · 아동보호  
및 아동학대사건 조사 등에 관  
한 사항
4. 나눔협력 · 자원봉사 · 희망이음  
· 현장복지서비스 · 주거복지 등  
에 관한 사항
5. 공중위생 · 식품안전 · 음식문화  
개선 · 위생지도 · 영상물관리 등  
에 관한 사항

제7조의3(문화환경국) ① 문화환경  
국에 문화관광과 · 체육청소년과  
· 교통행정과 · 주차관리과 · 청소

<p><u>생과 및 기후환경과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일자리창출 · 취업지원 · 사회적 경제 ·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경제정책 · 기업지원 · 창의발명 · 유통지원 · 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교통행정 · 교통시설 · 운수행정 · 교통사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주차기획 · 교통지도 · 차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5. 청소행정 · 재활용 ·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6. 공중위생 · 식품안전 · 음식문화 개선 · 위생지도 · 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7. 환경보호 · 대기보전 · 기후변화 대응 · 에너지관리 · 수질보전 · 환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제8조(도시창조국) ① ( 생 략 )</p> <p><u>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~ 2. ( 생 략 )</u></li> <li><u>3. 안전기획 · 재난관리 · 자연재해 · 민방위 · 통합관제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~ 6. ( 생 략 )</u></li> </ol>	<p><u>과 및 기후환경과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 관리 · 관광진흥 · 선사문화 · 별빛캠프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체육진흥 · 체육시설 ·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교통행정 · 교통시설 · 운수행정 · 교통사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주차기획 · 교통지도 · 차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5. 청소행정 · 재활용 ·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6. 환경보호 · 대기보전 · 에너지관리 · 수질보전 · 환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제8조(도시창조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-----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## 【관 계 법령】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시 · 군 · 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 · 군 · 구 본청의 실 · 국이나 과 ·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·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 · 군 · 구 본청에 두는 실 · 국이나 실 · 과 ·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 · 군 · 구 본청의 실장 · 국장과 과장 · 담당관의 직급과 실 · 과 ·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는 관할 시 · 군 ·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 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실 · 국과 실 · 과 ·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· 도와 시 · 군 ·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